

서울서부지방법원 2019. 2. 14 선고 2018가단15522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말소]

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 2019. 1. 24.

판결 선고 2019. 2. 14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1982. 5. 3. 접수 제3679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김양규

별지